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외국인 대상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 요청

1.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귀 협회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 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외국인의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의사가 외국인 여권번호 등의 정보를 도용하는 사례가 보도되는 등 외국인 대상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외국인 대상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관 등의 정보를 포함한 외국인등록번호를 우선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환자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 협회는 동 요청사항을 회원 및 비회원에게 널리 알려주시어 의료현장에서 외국인 대상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수의사회,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사단법인 한국동물병원협회, (사)한국병원약사회

주무관 심현준 약무사무관 김지선 과장 전결 2026. 7. 22. 김은주

협조자

시행 마약관리과-4539 (2026. 7. 22.)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마약관리과 / mfds.go.kr

전화번호 043-719-2889 팩스번호 043-719-2890 / shj512@korea.kr / 비공개(5)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